

제1남도학숙 공무원 채용 공고

남도학숙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설립한 향토장학관으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남도학숙 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조리원	공무직	2명	제1남도학숙 행정지원팀	주방 급식 및 음식조리 등

나. 채용방법 : 공개경쟁시험(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다. 근무조건

- 장소 : 제1남도학숙(서울 동작구)
 - 보수 : 「남도학숙 인사규정」 및 관련 관리규정에 따름
 - 호봉제 적용
 - 월 평균 265만원 이상(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년 130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시간 : 주 5일 근무(2교대, 식수인원에 따라 유동적)
 - 주중 2교대(1조 06:00~15:00 / 2조 11:00~20:00, 휴게 1시간)
 - 주말 2교대(1조 06:00~08:30, 10:00~13:30, 16:30~20:00, 휴게 1.5시간)
2조 09:00~13:30, 15:30~20:00, 휴게 1시간)
- ※ 주중 또는 주말 2일 휴무, 단 주휴일은 주중 휴무일 적용

라. 수습기간 : 「남도학숙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 중 업무 수행능력, 자질, 소양, 근무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임용계약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남도학숙 인사규정 제20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도학숙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남도학숙 인사규정 제40조(직원의 임기 및 정년)**

1. 1급 이하 : 60세(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3.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

- 각 전형단계점수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실시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 관련 연령 등의 적합 여부
- 합격자 선발 기준 : 적격자 전원

나. 2차 시험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별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답변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배점	심사 항목	배점
① 직원으로서의 자세	20점	② 업무적합성 및 경험	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점
⑤ 책임감·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 합격자 선발 기준 : 고득점자

4. 채용시 우대제도

- 적용방법 : ①, ②항목별로 각각 합산하여 면접시험에 적용
- 적용기준일 : 당해 채용의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구 분	적 용 범 위	가산비율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상자	만점의 5%
② 직무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양식·중식·일식 등) 이상 소지자	만점의 3% (1개만 인정)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사지원서 접수	2026. 4. 30. ~ 5. 11.	우편, 방문, 이메일
1차 심사(서류전형) 발표	2026. 5. 12.	남도학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차 심사(면접심사)	2026. 5. 19.	
합격자 발표	2026. 5. 20.	
결격사유조회	2026. 5. 28.까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6. 5. 29.	개별안내
임용(예정)	2026. 7. 1.	

※ 상기 일정은 학숙 상황 등에 따라 연기 및 조정될 수 있음.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 다. 서명필수)

- 가. 입사지원서(자사양식)
- 나. 자기소개서(자사양식)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사양식, **사진필수**)
- 라. 채용우대 대상자(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가. 최종 학력증명서
- 나. 주민등록등본·초본(병역사항 포함)
- 다. 가족관계증명서
- 라.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방법	주 소
우편,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6 남도학숙 행정지원팀 ☎06944
이메일접수	ndhs0228@ndhs.or.kr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남도학숙 홈페이지 (<http://www.ndhs.or.kr>) 알림마당→채용광고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가. 입사지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나. **채용우대 가산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지원서 가점항목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산됩니다.**

다.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통보없이 불합격 처리**하므로 원서 접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또는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이상 응시를 제한합니다.
- 나.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지원서 작성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내용 기재는 금지**됩니다.
-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을 취소합니다.
- 라. 모든 제출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합니다.
- 마. 접수된 입사지원서나 구비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아.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자. 이의신청 안내 :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우편, 방문을 통해 동작관 행정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참조]
※ 이의신청 예외 : 채용전형과 무관한 질의사항, 응시자·평가위원 개인정보 등
- 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1남도학숙 행정지원팀(☎02-820-32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